

2024

# 지방세

헤로운 방법으로 금내는

100문 100답





2024

# 지방세

혜로운 방법으로 금내는

100문 100답



아직도 종이고지서가 필요하나요?

#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세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대상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전자송달 신청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으세요!

## 적용일자

신청일 다음달부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가능

※ 지방세납부 자동이체 신청시 총 1,000원 할인 혜택

## 신청방법

### ① 위택스로 신청

위택스(스마트위택스앱)에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전자송달 신청

### ② 모바일앱 신청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사앱으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

간편결제앱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금융사앱	하나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광주은행
신용카드사	삼성카드, 신한카드

### ③ 행정기관에 신청

서구청 세무1과, 세무2과에 방문신청

## 문의처

서구청 세무1과 062-360-7288 / 세무2과 062-360-7930

# 지방세, 위택스로 납부하세요!

## 위택스란?

인터넷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 신고·납부, 증명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입니다.

- ★ 회원가입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디지털원패스 로그인·QR코드 로그인 중 택1)
-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



##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

각종 지방세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면허),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 담배소비세 등

##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

은행방문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 서구 관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문의처** 062-360-7931

★ 연세액 납부 신청기간

※ 2025년이후 연납공제율 3%(연납월을 제외한 기간)

신고시기	1월	3월	6월	9월
납부기한	1. 16. ~ 31.	3. 16. ~ 31.	6. 16. ~ 30.	9. 16. ~ 30.
공제율	자동차세의 4.57%	자동차세의 3.76%	자동차세의 2.52%	자동차세의 1.25%



# CONTENTS

## 1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지방세 납부 방법

09

## 2 지방세 개요

지방세

13

## 3 지방세 100문 100답

취득세	21
재산세	28
자동차세	32
주민세	36
지방소득세	39
등록면허세	41
지방세 체납처분	43
지방세 불복제도	46
지방세 환급제도	47
간편납부 방법	48

## 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마을세무사 제도	50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51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55
자동차와 지방세	57

# PART 1



##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지방세 납부 방법

---



# 1 지방세 납부 방법

## 가.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든 납부 가능

-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납부번호 또는 간편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 나. 편리한 신용카드 납부

-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모바일지방세납부앱(스마트위택스)에서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만 기기 이용료 900원이 발생합니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 ※ 조회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 차감 금액 및 차감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ARS(142211)를 통한 지방세 납부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ARS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365일 이용 가능하며, 일과시간 내 업무담당자 상담 가능

- 납부방법
  - 계좌 즉시출금 : 광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결제
  - 신용카드 결제 : 7개 신용카드(본인 및 타인 카드 납부 가능)
  - ※ 광주,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현대카드 결제
  - ※ 단, 취득세는 본인에게 부과된 건에 대해 본인 카드로만 납부가능

## 라.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란?

- 종이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연납
- 6월, 12월 : 자동차세
- 7월, 9월 : 재산세
- 8월 : 주민세(개인분)

#### 이런 점이 좋습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분실 및 개인정보 노출 걱정이 없습니다.
- 종이고지서를 줄이면 숲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은?

- 모바일 앱으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신청한 모바일 앱으로 송달합니다.

<b>간편결제 앱</b>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	-----------------

<b>금융앱</b>	광주, 기업, 농협,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신한, 전북, 하나, 새마을금고, K뱅크, 금융결제원, 삼성카드, 신한카드
------------	---

## 마.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서비스

- 계좌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면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에서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 대상세목 : 등록면허세(1월, 면허분),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개인분, 8월)
  - 신청방법 : 거래은행, 위택스(www.wetax.go.kr)
-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정기분 지방세 부과월의 23일에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 대상세목 : 등록면허세(1월, 면허분),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개인분, 8월)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각 구청 세무과
- 자동납부 신청방법
  - ① 가까운 거래은행 또는 각 구청 세무민원실에서 신청
  - ※ 신청서류 : 자동이체신청서, 통장사본, 도장(서명), 신분증 지참

② 위택스(www.wetax.go.kr)신청



### 세액공제 혜택

- 자동이체납부 또는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500원 세액공제
- 자동이체납부와 함께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1,000원 세액공제

### 바. 위택스 이용 방법 안내

- 위택스란?
  - 인터넷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을 신고·납부 할수 있고 증명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입니다.
-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
  - 인터넷으로 각종 지방세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면허),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 담배소비세 등
-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
  - 로그인 할 경우 전국 모든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납부번호 입력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방문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증명서 발급 등
  - 지방세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과세관청에 방문할 필요없이 위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전국의 모든 지방세 환급금을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를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ART 2

## 지방세 개요

지방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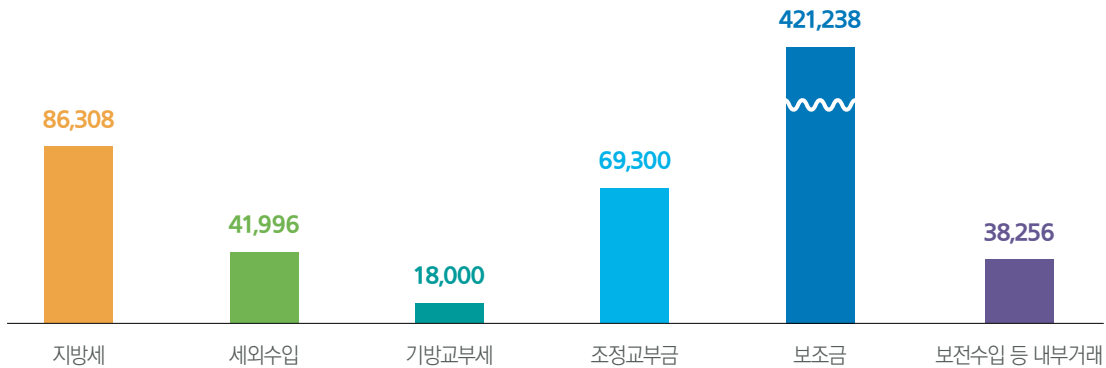
# 1 지방세

## 가. 우리 구 살림 규모(2024)

- 총예산액 : 675,098백만원
- 일반회계 652,503백만원 / 특별회계 22,595백만원

### 세입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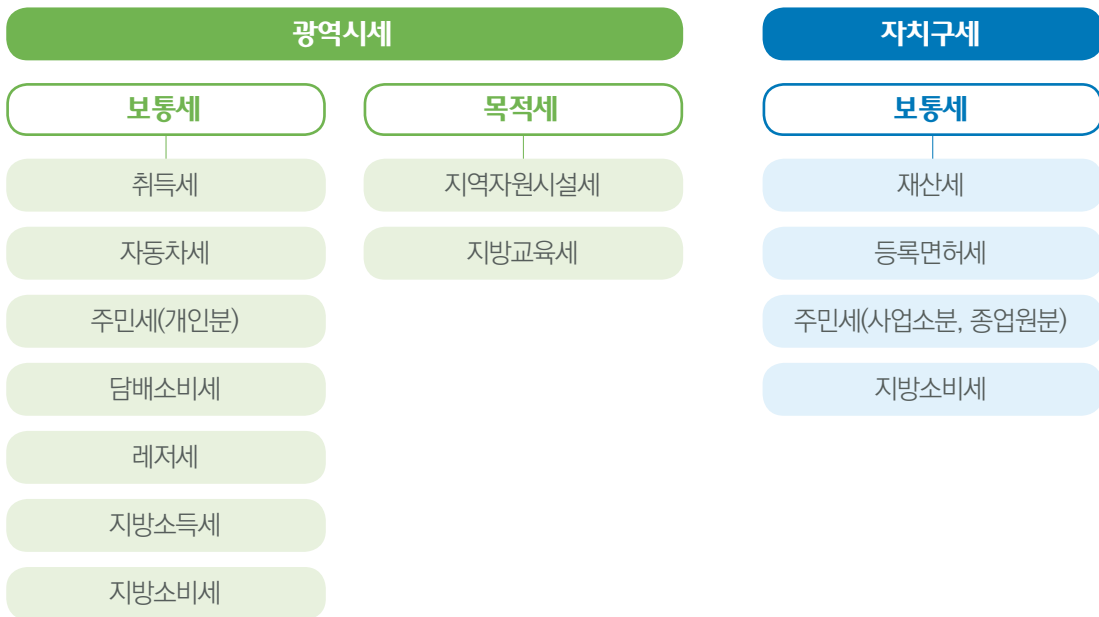
### 세출

(단위 : 백만원)



## 나. 지방세란 무엇인가?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주민 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지방세의 용도로는 도로개설, 주거 환경 개선, 복지 사업,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사업에 쓰입니다.
- 지방세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소방관련시설, 교육시설확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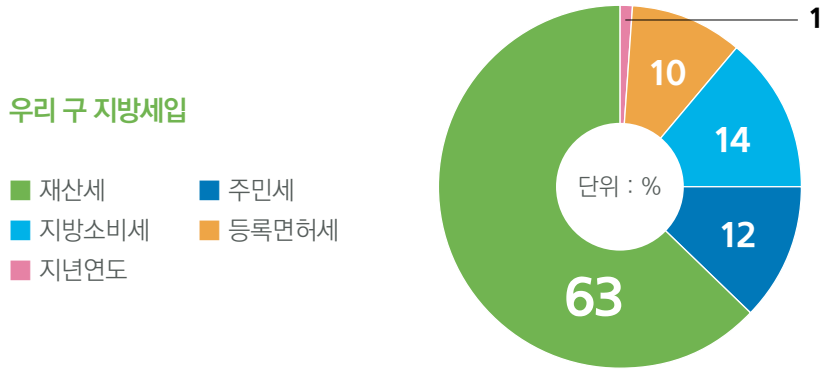


※ 징수주체에 따른 분류 : 광역시세, 자치구세로 구분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다. 2024년 지방세 규모

- 2024년도 우리 구 지방세 세입 총 예산은 86,308백만원으로 보통세 85,508백만원 지난해도수입 800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재정분석지표

재정자립도

(단위 : 천원)

예산규모	자체수입			재정자립도
	계	지방세	세외수입	
652,503,635	121,277,620	86,308,071	34,969,549	18.59%

주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2024년 본예산 기준)

(단위 : 천원 / 인구수 : 2023. 12. 31. 기준)

세입예산액			인구수(D)	주민 1인당 부담액		
자체수입 (A=B+C)	지방세(B)	세외수입(C)		자체수입(A/D)	지방세(B/D)	세외수입(C/D)
121,277,620	86,308,071	34,969,549	283,991명	427	304	123

**라. 세목별 지방세 납부 시기**

세목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li> </ul>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가산세 추가)</li> </ul>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분 : 등기·등록하기 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li> <li>면허분 : 면허 증서를 받기 전까지</li> </ul>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분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매년 1. 16. ~ 31.</li> <li>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지(가산세 추가)</li> </ul>
레저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li> </ul>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가산세 추가)</li> </ul>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출일의 다음 달 20일까지</li> </ul>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가산세 추가)</li> </ul>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이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li> <li>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li> </ul>
주민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소분 : 매년 8. 1. ~ 31.</li> <li>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li> </ul>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분 : 매년 8. 16. ~ 31.</li> <li>사업소분, 종업원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가산세 추가)</li> </ul>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지방소득 : 매년 5. 1. ~ 31.</li> <li>법인지방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li> </ul>
	특별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li> </ul>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가산세 추가)</li> </ul>
자동차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세액 일시납부(1, 3, 6, 9월) / 분할납부(3, 6, 9, 12월)</li> <li>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다음 달 말일)</li> </ul>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분 : 1기분(6. 16. ~ 30.) / 2기분(12. 16. ~ 31.)</li> <li>폐차·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li> </ul>



세목	납부방법	납부시기
재산세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분 : 매년 7. 16. ~ 31.(주택분1/2, 건축물, 항공기) 매년 9. 16. ~ 30.(주택분1/2, 토지)</li> <li>※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한 세액</li> <li>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li> </ul>
지역자원 시설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력발전·지하자원 :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li> </ul>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수 : 매 분기 구청에서 보통징수</li> <li>소방분은 재산세 부과 시 함께 부과</li> <li>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가산세 추가)</li> </ul>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주민세(사업소분), 담배소비세, 레저세와 함께 신고납부</li> </ul>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시 함께 부과</li> <li>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li> </ul>

### 마.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월 별	지방세 납부일정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 : 16일 ~ 31일</li> <li>•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 : 16일 ~ 31일</li> <li>• 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분) 신고납부</li> <li>•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납부(전년도 10월 ~ 12월분)</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 / 분할납부 : 16일 ~ 31일</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분) 신고납부</li> <li>•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납부(1월 ~ 3월분)</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세 확정 시 지방소득세(개인분) 신고납부 : 31일까지</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납부 : 16일 ~ 30일</li> <li>•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 / 분할납부 : 16일 ~ 30일</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주택분(1/2), 건축물분 : 16일 ~ 31일</li> <li>• 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분)신고납부</li> <li>•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4월 ~ 6월분)</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세(개인분) 납부 : 16일 ~ 31일</li> <li>•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31일까지</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분할납부 : 16일 ~ 30일</li> <li>• 재산세 주택분(1/2), 토지분 : 16일 ~ 30일</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분) 신고납부</li> <li>•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7월 ~ 9월)</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기분 자동차세(소유분)납부 : 16일 ~ 31일</li> </ul>	
매월	신고납부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li> <li>- 레저세 : 10일까지</li> <li>-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li> <li>- 담배소비세 : 20일까지</li> <li>- 자동차세(주행분) : 25일까지</li> <li>-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 말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li> <li>-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기·등록 전까지</li> <li>- 등록면허세(면허분) : 각종 인·허가 시</li> <li>-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양도, 말소)</li> <li>- 신고납부 세목 미납분 부과</li> <li>-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부과</li> </ul>

바.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제도

개정전	개정후	비고(시행일 등)
<b>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마다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마다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상향) -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li> </ul>	2024.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b>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규정</b>		
<b>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적용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매월 1만분의 66씩 가산됨</li> </ul>	2024.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b>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납부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납부 기한 연장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li> </ul>	2024.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b>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b>		
<b>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 1개월 이내 분납 가능(중소기업은 2개월)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li> </ul>	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
<b>출산·양육 주택</b>		
<b>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2024 ~ 2025년 중 출산부모</li> <li>• 출산1년전 출산후 5년내 취득 - 1가구1주택 취득세 100%감면</li> </ul>	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
<b>국가유공자 등 자동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국가유공자</li> <li>• 취득세·자동차세 100%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기존과 동일</li> <li>• 보훈보상대상자 감면 추가 - 취득세·자동차세 50%</li> </ul>	2026. 12. 31. (일몰기한)

# PART 3

## 지방세 100문 100답

취 득 세

---

재 산 세

---

자 동 차 세

---

주 민 세

---

지 방 소 득 세

---

등 록 면 허 세

---

지방세 체납처분

---

지방세 불복제도

---

지방세 환급제도

---

간편납부 방법

---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금내는

# 취득세 Q&A

Local TAX



001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등 간주 취득한 경우

A

002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A

003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100%를 감면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20호 이상은 취득세 50%만 감면됩니다.

※ (2020. 8. 17. 개정) 단기임대 폐지, 장기임대 8년 → 10년, 민간임대 중 아파트 제외

A

004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 등 계약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무상 취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등기등록이 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A

005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궁금해요!**

2024. 1. 1. ~ 2025. 12. 31.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다주택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감면)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A

006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당시의 가액으로하며,

- 유상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A

007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나요?**

해당 자녀의 소득<sup>1</sup>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sup>2</sup>의 40% 이상으로써 분가하는 경우에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단, 미성년자는 제외)

1.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2. 2024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2,228,445원

A

008

**현재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2채를 더 취득하려고 합니다.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종과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까지는 정상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지만, 3주택부터는 세율이 높아져(종과)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주택을 1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2개를 구입할 경우 납세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순서(2주택, 3주택)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

009

**1세대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A

010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자녀<sup>1</sup>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1.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A

011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나요?**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sup>1</sup>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1.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A

012

**1개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A

013

**상속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 방식은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A

014

**상속 취득세 신고 시, 감면이 가능한 1가구 1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sup>1</sup>가 국내에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무조건 상속인과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A

015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주택으로 보고 있나요?**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2020. 8. 12. 이후 취득)

A

016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어떨 때 추징되나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추징사유가 됩니다.

A

017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A

018

**취득세 임대 사업자 감면을 위한 임대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구청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과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019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상속인들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권자 중 한 분이 대표로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상속권자의 법정 상속 지분대로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불이익이 없음. 다만, 모든 상속권자들은 취득세 연대납세의무를 가지므로, 본인의 상속 지분만큼의 취득세 신고는 불가능하며,
- 신고납부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상속권자들이 협의하는 경우, 협의 내용대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A

020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이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회원권계약서 및 영수필증, 법인이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회원권계약서와 법인장부 및 영수필증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을 방문하셔서 취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A

021

**중여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20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2023년 법 개정으로 시가인정액<sup>1</sup>을 적용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 전 1년 이내 발생한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중 공시지가 차이가 가장 적은 것(시가인정액으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A

02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액제도<sup>1</sup> 때문입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감면세액의 최소 15%는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A

023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는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지목변경일 (건축물 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A

024

**증여를 받으려는 경우 취득세 신고 절차가 궁금해요!**

서구청 토지정보과(1층) 방문 → 증여계약서 작성 → 검인 → 증여계약서와 취득세 신고서 지참 → 부동산 취득세 신고 창구(1층) 방문 → 취득세 신고

A

025

**취득세 신고는 반드시 본인만 할 수 있나요?**

- 취득세 신고는 납세의무자(취득인)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취득세 신고서 하단의 위임장을 구비하여 대리인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

026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분실하여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세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확인서(취득세영수필확인서 대체 가능)를 발급받아 등기할 수 있습니다.

A

027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 사용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가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시 업무시설로 보아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A

028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더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잔금완납 후 취득세 신고시에는 분양가액(옵션가액 포함)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A

029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어떤 감면이 있나요?**

성인인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sup>1</sup>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A

030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취득의 유형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상세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부동산을 무상증여로 취득한 경우
  - 취득세 신고서, 증여계약서(검인)
-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 취득세 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상속인이 1가구1주택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부동산을 신축, 증축한 경우
  - 취득세 신고서, 건축물대장, 공사비 입증 관련 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A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금내는  
**재산세 Q&A**

Local TAX 

031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납부기한은
    - 토 지 : 9. 16. ~ 30.
    - 건축물 : 7. 16. ~ 31.
    - 주 택 : 7. 16. ~ 31.(전체세액의 1/2) / 9. 16. ~ 30.(나머지 1/2)
- ※ 세액(본세+도시지역분)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

A

032 **재산세 「세부담상한제」가 무엇인가요?**

-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에 비해 일정비율 이상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건축물 : 직전년도 고지세액의 150%까지
  - 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까지 상한을 적용

A

033 **재산세가 너무 많아 분할해서(분납) 납부하고 싶은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대상은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분할납부할 금액은 재산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재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A

034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전체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부부가 소유한 지분비율만큼 안분하여 부과합니다.

A

035

**아파트를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에 매매(양도·양수)한 경우에는 매수인(양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5월 31일에 매매한 경우는 매수자, 6월 2일 매매한 경우는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A

036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미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A

037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더 적게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1세대 1주택자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0.05%씩 인하해주고,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가 정상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옆집과 똑같은 주택이더라도 주택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A

038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60%
  - 단,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합니다.
- 건축물·토지 : 시가표준액 × 7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A

039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위택스(<http://www.wetax.go.kr>),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A

040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누구는 1장 누구는 2장 나와요?**

재산세(본세)가 20만원까지는 7월에 고지서 1장으로 한꺼번(연납)에 나가고, 20만원이 넘어가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2장이 나옵니다.

※ 7월 재산세 부과시 고지서에(연납) 또는 (1기)로 표시되므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A

041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상속등기를 안했는데(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상태) 왜 저한테 재산세가 나오나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중 대표납세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부과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대표납세자(지분이 많은자, 연장자 등)를 지정하여 부과합니다.

A

042

**저는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고지서가 총 몇장 나오나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각각 부과되며, 상가주택인 경우 3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에 주택(연납여부에 따라 7월/9월 부과)과 건축물(상가) 고지서, 9월에 건축물에 대한 토지 고지서가 나가므로 총 3장 또는 4장의 고지서가 나옵니다.

A

043

**이사를 갔는데 고지서 받는 곳을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이사 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 하지만,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으면 해당 구청으로 전화해서 거소지 설정을 하면 수령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종료일자를 설정하거나, 사유 종결시 구청에 전화하여 거소지 삭제를 해야 합니다.

A

044

**옆집과 우리집은 똑같은 집인데 왜 이렇게 재산세가 차이나요?**

1세대 1주택 제도가 생긴 후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일 경우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동주택가격의 60%가 아닌 43 ~ 45%의 적용을 받으므로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고, 또한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총 재산세에서 명의자 지분별로 분할되어 나감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

045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무엇인가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사용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A

046

**무허가 건물 취득신고와 재산세 납세자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등기를 안할 뿐이지 세무과에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증여인,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세자 명의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A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금내는  
**자동차세 Q&A**

Local TAX 

047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이고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는 매년 6월과 12월입니다. 단,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경차, 화물차 등)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A

048 **자동차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차종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세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승용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기타승용(전기차등)	20,000원		100,000원	
승합	25,000원 ~ 100,000원		65,000원 / 115,000원	
화물	기본: 6,600원 ~ 45,000원 (1만kg 초과마다 1만원 가산)		기본: 28,500원 ~ 157,500원 (1만kg 초과마다 3만원 가산)	
특수	13,500원 / 36,000원		58,500원 / 157,500원	
삼륜이하	3,300원		18,000원	

A



049

**자동차세를 일시에(연납)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 관할 구청에 1, 3, 6, 9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나중에 신고·납부할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연세액 신고·납부시기**

구분	내용			
신고시기	1월	3월	6월	9월
납부기한	1. 16. ~ 31.	3. 16. ~ 31.	6. 16. ~ 30.	9. 16. ~ 30.
공제율	자동차세의 4.57%	자동차세의 3.76%	자동차세의 2.52%	자동차세의 1.25%

※ 2025년 이후 연납공제율 3%(연납월을 제외한 기간)

A

050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는 매년 해야 하나요?**

-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으로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신규 차량 등록시 별도로 신청해야함)
- 하지만,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A

051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만큼 내는 세금이므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계산하여 다음달에 환급이 되며, 더 빨리 환급받고 싶은 사람은 주소지 세무과에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신청하면 됩니다.

A

052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 관할 관청으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A

053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요?**

- 자동차를 상속받아 사실상 운행하는 상속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자에게 부과합니다.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 순위가 동일하면 그 중 연장자에게 부과됩니다.

A

054

**연납한 차량을 가족 또는 지인에게 이전해도 자동차세를 환급 받아야 하나요?**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환급받지 않고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A

055

**자동차를 양도·말소 후에 자동차세가 또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한 다음달에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수시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A

056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할 경우 자동차세가 감면되나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할 경우 공동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감면이 됩니다.

A

057

**자동차를 오래탈수록 세금이 적게 나온다면 사실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에 5% 경감을 시작으로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A

058

**지방교육세가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A

059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나요?**

내연기관이 탑재되지 않아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차량 크기와 가격에 상관없이 비영업용 기준 130,000원입니다.(자동차세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A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금내는

## 주민세 Q&A

Local TAX



060

**주민세(개인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A

061

**주민세(개인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외국인 포함)에게 주민세가 부과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A

062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주민세고지서가 2장 나왔어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대주한테 나오는 주민세(개인분)와 사업자한테 나오는 주민세(사업소분) 고지서 2장이 나옵니다.

A

063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사업주
- 법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A

064

**주민세(종업원분)의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는 무엇인지?**

중소기업이 최초로 직원을 50명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해당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하여야 할 달부터 1년간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지방세법 제84조의 5에 따라 계산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A

065

**외국인인데 주민세(개인분)을 납부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 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국내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은 주민세 과세 대상입니다.

A

066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서구에서 나온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하나요? 이사로 온 곳에서도 부과되나요?**

과세기준일(7. 1.)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납부해야 하며 과세기준일 이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사 간 곳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

067

**기숙사에 거주 중인 경우 주민세(개인분) 납세 의무가 있나요?**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A

068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장인에게도 주민세(개인분)가 과세 되나요?**

기숙사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하고 2~3년간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장소를 주민세 과세 대상 주소로 보기에 개인분 주민세가 과세 됩니다.

A

069

**일시 휴업중이더라도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의무가 있나요?**

사업장이 과세기준일(7. 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A

070

###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sup>1</sup>의 월평균 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1.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액의 총액으로 같은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

A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금내는

# 지방소득세 Q&A

Local TAX



071

## 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sup>1</sup>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1.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A

072

## 소득세(국세)를 납부하였는데 지방소득세를 또 납부해야 하나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국세인 소득세와는 별개이며,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A

073

##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 개인지방소득세(매년 1. 1.~12. 31.까지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 다음해 5. 1.~31. 까지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양도일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A

074

##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A

075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 현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 신고납부합니다.

A

076

###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고, 납부는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고,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A

077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내는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구청)에 납부합니다.

A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금내는

## 등록면허세 Q&A

Local TAX



078

###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 등록면허세는 법에 따른 등기·등록(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을 하는 경우와 면허를 받는 자(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 소유권 보존 및 등기, 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설정과 이전,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법인 등기 등과 사업자등록 또는 변경, 음식점·숙박업 등의 영업 허가 또는 변경, 건축 허가 또는 변경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A

079

### 12월에 면허를 받으면서 등록면허세를 냈는데 1월에 또 고지서가 나오는데 맞는가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을 때 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A

080

### 사업장은 하나인데 왜 등록면허세(면허)를 여러건 납부해야 하나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각종 법령에 의해 면허·허가·인가 등을 각각 따로 받은 경우에는 인·허가받은 면허의 종류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A

081

**폐업을 했는데 1월에 등록면허세 고지서 나왔어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폐업을 했다면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폐업을 하였다면 당해연도 면허세는 납부하여야합니다.

※ 폐업을 한 경우에는 세무서(사업자등록)와 면허를 받은 구청(해당 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A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금내는

## 지방세 체납처분 Q&A

Local TAX



082

**지방세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최대 39.6%),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및 해외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A

083

**부동산 압류 당시 체납된 금액만 납부하면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나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부과된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때문에 체납되어 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현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A

084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지방세 부과 후 5년(5천만원 이상은 10년) 동안 징수활동을 하지않으면 부과된 지방세는 소멸하게 되지만, 독촉·압류 등 시효 중단의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 5년에 대한 규정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환급받고자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5년 동안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A

085

**광주 서구청에서 진행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매대행사 사이트인 오토마트(<http://www.automart.co.kr>)에 접속해서 공고번호, 입찰기간, 개찰일, 입찰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

086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체납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까지 미치지 때문에 피상속인의 체납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A

087

**지방세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 납세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제3자가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포함)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A

088

**지방세 관련 증명서는 구청에서만 발급 가능한가요?**

인터넷(정부24)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근 구(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A

089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금융거래에도 영향이 미치나요?**

체납자의 주거례 은행정보를 확인해 예금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자료(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A

090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던데요?**

- 자동차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며, 영치 시에 소유주의 자동차등록번호, 영치일시, 번호판 보관장소, 체납금액 등을 기재한 영치증을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교부하게 되며,
- 자동차번호판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에 방문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A

091

**지방세가 정리보류(결손처분) 되었는데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리보류되었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완납 시까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도 제한됩니다.

A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금내는

## 지방세 불복제도 Q&A

Local TAX



092

### 과세전적부심사란?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와 과세예고통지가 있습니다.
- 청구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093

### 이의신청제도가 무엇인가요?

- 이의신청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2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094

### 심판청구제도가 무엇인가요?

-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심판청구를 바로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처분청(구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095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무엇인가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A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금내는

## 지방세 환급제도 Q&A

Local TAX



096

### 지방세환급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납세자의 착오 또는 이중납부, 과다납부, 이익신청·심판청구 등에 의한 경정결정, 자동차세(연납)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에 의한 감액, 국세(법인세, 소득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A

097

### 지방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위택스 : [www.wetax.go.kr](http://www.wetax.go.kr))에서 환급금 발생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을 통해 계좌입금받을 수 있으며,
-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각 구청에서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내 환급금 발생 사실을 통지하게 되므로 납세자는 구청에 전화하여 납세자 본인명의 계좌를 알려줌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A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금내는

## 간편납부 방법 Q&A

Local TAX



098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는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납부 등이 있습니다.

A

099

**지방세 ARS납부 가능한가요?**

비대면 지방세 간편납부 방법으로 ARS(142211/전국공동) 연결하여 안내멘트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A

100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할부 가능한가요?**

일시불 및 할부로 결제 가능하며 할부 선택시 수수료는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A



## PART 4

#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마을세무사 제도

---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

자동차와 지방세

---

# 1 마을세무사 제도

## 가. 마을세무사란?

-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재산 5억원 이상, 지방세 불복청구 3백만원 이상의 경우 무료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나. 마을세무사 이용 방법

- 구청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여 가까운 마을세무사 검색
- 1차 상담 : 전화, 팩스, 전자우편 상담
- 대면 상담 : 1차 상담 후 필요 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 다. 우리 구 마을세무사 현황

관할 동	세무사	전화번호	관할 동	세무사	전화번호
양동, 양3동, 상무2동	최시라	062-366-0610	상무1동, 화정1동	김철용	062-373-4991
농성1동, 농성2동	김용식	062-385-1030	화정2동, 화정3동	윤정두	062-716-0090
광천동, 유덕동	김길수	062-381-7788	화정4동, 서창동	오상화	062-714-3041
치평동	고영동	062-384-8900	금호1동, 금호2동	박광복	062-224-2664
치평동	전해만	062-371-0041	풍암동, 동천동	이철기	062-383-1230

# 2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 가. 부동산 취득과 등기 흐름도



## 2024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금**내는 100문 100답

### 1. 취득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 취득세 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사본

### 2. 소유권이전등기 시 준비할 서류(소재지 관할 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부(신청서 첨부용 1부, 매수자 보관용 1부)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 아파트 등 집합건물 : 토지대장(대지권비율표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위임장(매도인 인감날인)
- 매도인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매도인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등기권리증)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표시)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 매입율)
- 정부수입인지
  -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1억원 이하의 면제
-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15,000원

###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한 60일 경과 시 불이익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자치구에서 계약서 검증을 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해태기간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관련 세율

구분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	6억 이하	85㎡ 이하	1.0%	-	0.1%	1.1%
		85㎡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 9억 이하	85㎡ 이하	1 ~ 3%	-	0.1 ~ 0.3%	1.1 ~ 3.3%
		85㎡ 초과	1 ~ 3%	0.2%	0.1 ~ 0.3%	1.3 ~ 3.5%
	9억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법인 취득		12.0%	1.0%	0.4%	13.4%	

※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기준 면적 이내 토지 : 농특세 비과세(중과세대상 제외)

주거 외 부동산 취득 관련 세율

구분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외매매(토지, 건물등)		4.0%	0.2%	0.4%	4.6%
농지	매매	3.0%	0.2%	0.2%	3.4%
	상속	2.3%	0.2%	0.06%	2.56%
원시취득·상속(농지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0%

다. 인지세(국세)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	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 1억원 이하는 비과세

## 라. 부동산 취득시 세금 외 추가비용

### 등기신청 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5,000원	13,000원	10,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매입대상	매입금액
<b>주택</b>	
㉑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
㉒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9%
㉓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 6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1%
㉔ 시가표준액 1억 6천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3%
㉕ 시가표준액 2억 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6%
㉖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3.1%
<b>토지</b>	
㉑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5%
㉒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0%
㉓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5.0%
<b>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b>	
㉑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 3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0%
㉒ 시가표준액 1억 3천만원 이상 2억원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6%
㉓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2.0%
<b>상속(증여 그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b>	
㉑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8%
㉒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8%
㉓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2%
<b>저당권의 설정</b>	
㉑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저당권설정금액의 1% 단,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
㉒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3

##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 가. 재산세(지방세)

## 1. 주택 및 건축물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1/2)과 9월(1/2)에 나누어 과세되고, 일반 건축물은 7월에 과세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 2. 토지

-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그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대상(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대상(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자경농지 등)으로 분류되며, 9월에 과세됩니다.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주택 외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 나. 종합부동산세(국세)

## 1. 납세의무자

## • 주택

- 전국 주택공시가격의 합산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합산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합산배제 임대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봄

##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 :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납기 : 매년 12. 1. ~ 15.

## 2024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금내는 100문 100답

### • 서울

#### 주택분 서울인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폐지

과세대상	과세표준	서울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주택	3억원 이하	0.5%	2.7%	0.5%	5%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0.7%		0.7%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1.0%		1.0%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15억원 이하	1.0%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2.0%		
		45억원 초과	3.0%		
	별도합산 과세대상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		

※ 과세표준 =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과세

###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내용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제한도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 ~ 65세	20%	5 ~ 10년	20%	80%
65 ~ 70세	30%	10 ~ 15년	4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 4 자동차와 지방세

## 가. 자동차의 등록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구분	구비서류
국내제작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등록신청서</li> <li>• 자동차제작증(제작회사 발행)</li> <li>•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2매(앞·뒤)</li> <li>• 임시운행 허가증</li> <li>•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li> </ul> ※ 대리신청 : 소유자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외국수입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필증</li> <li>• 수입자 인감증명서</li> <li>• 제작증(판매회사 발행)</li> <li>• 소음인증서</li> <li>• 배출가스인증서</li> <li>• 위탁판매계약서 사본</li> </ul>

이전등록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li> <li>• 자동차등록증</li> <li>• 민원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포함)</li> <li>•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신 소유자)</li> </ul> ※ 대리 신청 : 양수인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신분증사본, 양도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li> </ul>
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동의서(서명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li> <li>•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li> </ul>
공매·경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각결정서</li> <li>• 경락대금완납증명서(경매의 경우)</li> </ul>

## 나. 자동차 취득 및 소유

### 자동차 관련 세율

세목	차종	세율	납기
<b>취득단계</b>			
취득세	비영업용승용차	• 7%(경차 4%)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 단, 등록 시 등록 전 납부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5%(경차 4%) • 영업용 4% • 이륜자동차 2%	
	위 외의 차량	• 2%	
<b>사용단계</b>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연세액(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 연세액의 5% × (차령 - 2)]</li> <li>승용차 이외는 정액세</li> </ul>		1기분 : 6. 16. ~ 30. 2기분 : 12. 16. ~ 31.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소액자동차세(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6월)에 전액 과세

### 자동차 차령(차연식)에 따른 자동차세액 경감

3년 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되는 해부터 5%씩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금액표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규등록	이전등록
승용차	배기량 1,600cc이상 (영업용 1,000cc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
	배기량 2,000cc이상	5%	6%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3%	1.5%	1%	0.5%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0.6톤 미만	1.5%	0.75%	0.5%	0.25%
	0.6톤 이상	3.0%	1.5%	1%	0.5%

※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12조, 별표1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천원 단위로 계산

### 1.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

※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12조, 별표 2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 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역개발채권 전액 면제
  -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 공제

## 다. 세금감면 안내

### 1.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

- 감면대상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등
- 감면내용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제29조
- 감면요건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5·18유공자(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경도 장애이상)이 보철용·생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공동등록 :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 시에는 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①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③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함
- 추징사유(취득세) :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가(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한 때)한 때

## 2. 다자녀 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

- 감면대상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내용 : 취득세 면제(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140만원까지 면제)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감면요건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추징사유 :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3.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수소차)감면

- 감면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 감면내용 : 취득세 감면(최대 75만원까지 감면)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4. 지방세 관련 증명

### 지방세 관련 증명 종류

구분	내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와 요구에 따라 취득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여 즉시 발급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발급 ※ 단,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방세 납부확인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용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과세관청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재산세 납부 및 체납한 사실에 대한 증명

※ 타인(가족포함)으로 하요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을 구비하여 신청

신청방법

구분	자치구 방문신청	정부 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무인 민원발급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	○
지방세 납부확인서	○	○	○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용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5. 지방세 안내전화

세무1과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	지방소득세	FAX
062-360-7258	062-360-7927	062-360-7469	062-360-7827	062-360-7779

세무2과

자동차세	체납징수	세외수입	FAX
062-360-7531	062-360-7297	062-360-7432	062-360-7179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062-360-7299

2024

# 지 방 세

헤로운 법으로 금내는

100문 100답

**발행일** 2024. 4.

**발행처** 광주광역시 서구청 세무1, 2과

본 자료는 지방세 참고용이므로 법적책임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